

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99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29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8. 29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관광진흥과장 김영국)

가. 제안이유

제302회 고성군의회(제1차 정례회) 2025. 6. 11. 원안 가결된 「와도 야영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」과 관련하여, 2026년 예산 편성 요구액 증액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1)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2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- 3)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78조(지역자율제정의 세입과 세출)
- 4) 「섬 발전 촉진법」 제6조(사업계획의 수립) 및 「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」 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)
- 5) 「살고 싶은 섬」 가꾸기 가이드라인(경남도, 2022. 4.)

다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: 와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

2) 위탁대상: 와도 야영장

가) 위 치: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(와도) 1572, 1582번지 일원

나) 시설규모: (신설) 게스트하우스(2동, 80㎡), 방문자센터(1동, 49.2㎡)
(리모델링) 야영장(1동, 62.78㎡)

- 오수처리시설: 6톤/일

3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2년(예정: 2025. 9. ~ 2027. 8.)

4) 위탁방법: 와도 마을협동조합 수의계약

- 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

5) 위탁사무 내용: 와도 야영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

- 야영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
- 야영장 이용자 대상 선박 운항

- 야영장 이용자 안전관리 및 민원해소

-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

- 기타 야영장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

6)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지역공동체 구성원 소득사업 활성화

- 「살고 싶은 섬」 가꾸기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을 지역 주민의 소득 사업원으로 환원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 강화

- 섬 지역 야영장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

- 여객선 등 대중교통 미운항 지역의 야영장 이용객 불편·민원해소 등의 빠른 조치 및 편의성 제고

라.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변경)

1) 변경내역

구분	당초	변경	증감액
소요예산	0천 원	9,906천 원	9,906천 원
정산방법	수익과 상계 처리 (비용 미발생)	적자(운영원가>수익) 보전	원가 재산정 (선박관리인 1명 인건비 반영)

- 변경사유: 선박관리인 1명 인건비(주 7일, 1일 2시간) 반영하여 재산정 시 연간 약 5,000천 원의 적자 발생

(*당초: 890천 원 흑자로 위탁수수료 미부과)

2) 위탁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 천 원)

연도	소요예산 (원가-수입)	운영원가	운영원가 세부내역			수입	비 고
			인건비	운영비	기타		
계	9,906	127,290	45,376	7,767	74,146	117,384	
2026년	4,105	62,797	22,386	3,832	36,579	58,692	
2027년	5,801	64,493	22,990	3,935	37,567	58,692	물가상승률 2.7% 반영

3) 산출근거: 고성군 와도 숙박시설 위수탁 비용산정 용역(2024)

-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도 소요예산 기준)

구 분		금 액(원)	비 고
인건비		22,386,102	▲ 총괄관리자(1명), 대체인력(1명)
경비		3,832,106	▲ 인보험료, 소모품비, 세금과공과, 지급수수료 등
순원가(인건비+경비)		26,218,208	
일반관리비	5%	1,310,910	▲ 순원가의 5%
운영원가(순원가+일반관리비)		27,529,118	
부가가치세	10%	2,752,911	▲ 운영원가의 10%
총계(운영원가+부가가치세)		-4,105,000	
정산비		32,515,758	▲ 선박관리인(1명) 인건비(4,996천원), 선박 유류대, 수선비 등
운영비(총계+정산비)		62,797,787	
수입		58,692,000	
위탁운영비		-4,105,000	▲ 천원미만 절사

마. 위탁의 적정성 검토: 적정

바. 추진일정

가. 2025. 9.: 야영장 시설 운영 위탁 군의회 변경 동의

나. 2025. 9.: 수탁자 선정 완료 및 운영 개시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-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설치된 와도 야영장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의 20% 이상 변경의 중요내용 변경으로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제출됨.

○ 주요 내용 검토

- 의회(변경)동의요청: 민간위탁 예산의 20% 이상 증액으로 중요내용에 해당

구분	당초	변경안	중요 변경 사유
민간위탁 금액 (2년간 소요예산)		9,906천 원	(2년) 9,906천 원
정산 방법	수익과 상계 처리 (비용 미발생)	(운영원가 > 수익) 적자 보전	소요 예산산출(정산방법 변경) 원가 재산정(선박관리인 인건비)

- 위탁연도별 소요예산: (2026년) 4,105천 원, (2027년) 5,801천 원
- 산출근거: 고성군 와도 숙박시설 위수탁 비용산정 용역(2024) 보고서에 근거하여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 산출함.
- 관련 절차 이행 여부: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

- 본 변경 동의안은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예산액이 20% 이상 변경과 함께 위탁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군의회의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